

# 스포츠산업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스포츠산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연구소의 목적)** 연구소는 체육 및 스포츠 분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스포츠산업 및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연구소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민체력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
2.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
3. 운동선수의 체력관리 및 스포츠 산업을 위한 연구
4. 체육 및 스포츠 과학화를 위한 각종 토론회, 강연회, 학술연구발표회 개최
5. 국내·외 관련 기관의 학술교류 및 협동연구
6. 외부기관과의 위촉에 의한 전문연구 및 자문
7.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

## 제2장 조직

**제4조(구성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, 연구위원, 자문위원 및 간사를 둔다.

②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.

1. 스포츠산업 연구분과
2. 스포츠심리 연구분과
3. 스포츠매니지먼트 연구분과
4. 스포츠마케팅 연구분과
5. 스포츠의과학 연구분과
6. 운동생리학 연구분과
7. 스포츠경제학 연구분과

**제5조(연구소장)**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소의 연구, 사업 및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연구소장은 본교 체육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.
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분과장)** ① 각 분과에 분과장을 두며,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② 분과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7조(연구위원 및 자문위원)** ① 연구소의 사임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위원을 둔다.

② 연구위원은 전임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으로 구분한다.

③ 전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객원연구위원은 스포츠산업분야의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자문위원은 조사·연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계의 권위 있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9조(연구원)** ① 연구자료 수집 등 연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### 제3장 위원회

**제10조(운영위원회)**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연구위원 및 연구원 추천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제4장 재정

**제11조(재정)** 연구소의 재정은 위탁사업 기금과 국내외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12조(회계)**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,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**제13조(준용)**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4. 7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